

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17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[별 지]

현 행: [별표 17]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(조례 제25조제17호 관련)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[별표 18]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[별표 18]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)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아목, 자목,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)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중학교·고등학교(졸업 시 중학교·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)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용만 해당한다)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(「하수도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)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. 단,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한다.
 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 - 나.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중 군부대부지에 설치하는 경우
 - 다.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개정안: [별표 17]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(조례 제25조제17호 관련)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[별표 18]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[별표 18]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)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아목, 자목,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)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중학교·고등학교(졸업 시 중학교·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)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용만 해당한다)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(「하수도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)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(현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)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수정안: [별표 17]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(조례 제25조제17호 관련)

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[별표 18]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[별표 18]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)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아목, 자목,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)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중학교·고등학교(졸업 시 중학교·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)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용만 해당한다)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(「하수도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)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